

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

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『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 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에 따라 수거·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분(매각, 기증, 공공자전거로 활용 등)됨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 내에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19. 7. 12. ~ 7. 26.(14일)

나. 공고대상 : 공공시설물에 장기간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

다. 공고수량 : 306대

라. 강제처분 일시 : 2019년 7월 27일 이후

마. 보관장소 : 서대문구청 방치자전거 보관소

바. 문의처 :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(☎330-1906)

2019. 7. 12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